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1965년체제

—정영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답한다⁰⁰¹

박유하(세종대 교수)

1. 오독과 곡해—정영환의 “방법”

재일교포 학자 정영환이 나의 책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에 대한 비판을 『역사비평』 111호에 실었다. 우선 이 비판의 당위성 여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비판 자체에 유감을 표한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이 책의 저자로서 고발당한 상태이고, 그런 한 모든 비판은 집필자의 의사 여부를 떠나 직간접으로 고발에 가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8월에 제출된 원고 측 문서에는 정영환의 비판논지가 채용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재승의 서평도 통째로 근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다. 가치분재판 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된 원고 측 문서에는 윤명숙과 한혜인의 논지가 구체적으로 인용되어 있었다. 2014년 6월에 제출된 최초의 고발장에는 내가 10년 전에 낸 책인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비판논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에 대한 비판에 참여한 학자/지식인들이 이러한 정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비판을 하고 싶다면 소송을 기각하라는 목소리

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법정으로 보내진 학술서’에 대해 취해야 했던, ‘학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었을까.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심지어 『한겨레신문』에 인용되어 나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기여했음에도⁰⁰² 정영환의 비판에 그동안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비판이 오독과 곡해로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그가 나의 것이라고 말했던 “자의적 인용”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결론이 앞서는 적대를 기반으로 깔고 있어, 사실 읽는 일 자체가 우울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반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의 입장과 논지를 확인해두도록 하겠다.

1)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국가의 책임에 대한 입장

정영환은 내가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482~483쪽, 이하 ‘쪽’은 생략)한다면서 “식민주의 비판이 없”(492)기에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소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육망’에 이 책은 잘 호응”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역사수정주의자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491)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부정한 것은 ‘법적’ 책임일 뿐이고, 당연히 일본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일본어판에는 “국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영환은 그런 부분에는 침묵할 뿐 아니라 “역사수정주의자”라는, 한국에서 비판받고 있는 존재를 호명해 그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식의 ‘왜곡’을 자신의 비판 “방법”으로 사용한다.⁰⁰³

정영환의 말대로라면 이 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들—“이 문제제기에 일본 측이 어떻게 대답해 나갈 것인지를 물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스기타 아츠시, 서평, 『아사히신문』 2014. 12. 7), “어디서나 다 있었던 일이라고 일본이 강변하지 않고 제국주의 팽창을 넘어서는 사상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면 세계사

적 의의는 크지 않은가? 라는 박유하의 물음에 나는 반대할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다”(야마다 다카오, 칼럼, 『마이니치신문』 2014. 12. 21), “나는 이 책을 읽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한층 깊어졌을 뿐이다”(와카미야 요시후미, 칼럼, 『동아일보』 2014. 7. 31)은 다 잘못 읽은 서평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 어떤 우파는 나의 책이 전쟁책임의 틀에서만 다루어졌던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배책임으로 물으려 한다면서 “일본 좌파보다 무서운 책”이라거나 “고루한 지배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정영환은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한일합방을 긍정”했다고 쓴다. 그러나 나는 한일합방 무효론에 회의를 표하면서도 “물론 현재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정말로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을 패전 이후 국가가 정식으로 표현한 일이 없었다는 인식이 혹 일본 정부에 생긴다면, ‘법적’으로는 끝난 한일협정이라 할지라도 재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국내외적 혼란은 그 재고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결과이기도 하다”(『화해를 위해서』, 235)라고 썼다. 말하자면 나는 한일합방도 한일협정도 “긍정”하지 않았다.

나는 위안부를 만든 것은 근대국민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주의, 제국주의의 여성/민족/계급/매춘차별의식이므로 일본은 그런 근대국가의 시스템 문제였음을 인식하고 위안부에 대해 사죄/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런데도 정영환은 ‘박유하는 한일합방을 긍정하고 1965년체재를 수호하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학자’에 의한 이러한 왜곡을 범죄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영환의 비판 “방법”은 서경식이나 김부자 등 다른 재일교포들의 나에게 대한 비판방식과 지극히 닮아 있다. 그들 역시 『화해를 위해서』의 반은 일본 비판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고, 나를 ‘우익에 친화적인 역사수정주의

자'라는 식으로 말해왔다.

2) 한일협정에 대한 입장

정영환은 내가 “1965년체제의 수호를 주장”(492)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협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곧 ‘수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일본을 향해서 쓴 부분에서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고 썼다. 정영환이 말하는 것 같은 “수호”는 커녕 그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청구권을 없애버린 것을 지적한 것은, 1965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의식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방법에 대해

정영환과 달리, 비판하고 싶을수록 자신도 돌이켜보자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역사학자나 법학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일 수 있지만, 문제 자체 이상으로 양국 ‘갈등’의 원인과 해소에 관심이 큰 연구자로서 필연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정영환은 이 책의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이 다른 것이 무언가 음험한 “의도”가 있어서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책이 대립하는 양국 국민들을 향해 가능한 한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중심을 둔 책인 이상, 일본어판이 일본어 독자를 의식하며 ‘다시’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시시각각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바라보며 가능한 한 빨리 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던 한국어판에는 당연히 거친 곳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어판을 쓰게 되었을 때 그런 곳들이 수정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문제’, ‘일본의 문제’를 따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바꾼 것도 그런 맥

락에서의 일일 뿐이다.

2. “방법” 비판에 대해서

1) 빛나간 잣대

정영환은 내 책이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책을 학술서 형태로 내지 않은 것은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고, 일반 독자들은 아무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책이 정영환에게 “읽기 쉬운 책이 아니”(474)게 된 것은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의 방법과 내용이 정영환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2) 폄하

정영환은 내가 위안부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문제시하면서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474)고 “수많은 연구가 일본군이 점한 각 지역의 위안부 징집이나 성폭력 문제에 나타나는 특징을 논한 바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포지션의 유사성(물론 그들 간의 차별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다)을 지적하면서 대일본제국에 포섭된 여성들과 그 이외의 지역 여성들의 “차이”를 지적한 연구를 알지 못한다. 정영환의 “방법”은, 나의 책이 ‘매춘’에 언급한 점을 들어 실은 우익이 일찍이 한 이야기라고 폄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나의 시도는 그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 “매춘”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데 있었다.

3) “방법” 이해의 미숙

정영환은 조선인 위안부의 “정신적 위안자” 역할에 대한 나의 지적이 “비약”이자 “추측”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선 증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마음 여부 이전에 조선인 위안부가 그런 틀 안에 있었다는 점이다. ‘국방부인회’의 띠를 두르고 환영/환송회에 참가한 이들이 설사 내심 그 역할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그런 표면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없는 “추측”은 물론 배제되어야 하지만, 모든 학문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상상’한 ‘가설’을 구축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는 모든 것을 증언과 자료에 기초했다. 책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들도 곧 따로 정리해 발표할 생각이다. “동지”라는 단어를 쓴 것도 우선은 제국일본에 동원되어 ‘일본’인으로 존재해야 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정영환은 군인에 관한 위안부의 “추억”을 논한 부분을 들어 “추억”에 대한 ‘해석’을 “먼 거리가 있다”(475)며 비판한다. 그러나 학자의 작업은 ‘개별적인 예’들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구조를 보는 일이다. 내가 시도한 작업은 “증언의 고유성이 경시”되기는커녕 그동안 묻혔던 한 사람 한 사람 증언의 “고유성을 중시”하며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이었다. ‘대상의 의미’를 묻는 작업에 자신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이의 작업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문맥에서 정영환은 “일본인 남성”의, 그것도 “소설” 사용은 “방법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475)고도 말한다. 이러한 비판은 일본인 남성의 소설은 그 존재 자체가 일본에 유리한 존재일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만드는 것이지만, 나는 일본이 위안부를 어떻게 가혹하게 다루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에서 소설을 사용했다. 위안부들의 참혹한 생활이, 다른 아닌 위안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군인들, 후에 작가가 된 이들의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일본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조상이 쓴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위안부의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증언에 힘을 실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했을 뿐이다. 정영환은 역사 연구자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설” 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소설이, 허구의 형태를 빌려 때로 진실 이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장르이기도하다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다.

정영환은 자신의 정황을 “운명”이라 말한 위안부를 내가 평가한 것을 비판하지만, 위안부의 증언에 대한 평가 역시 “고유성을 중시”하는 일이다. “운명”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정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가 평가한 것은,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시키는 그러한 “평가”가 부정되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와 반대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위안부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행위와 정반대”(476)가 되는 건 아니다. 학자라면 오히려, 증언에 대한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여러 정황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⁰⁰⁴ 더구나 거짓증언까지도 목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⁰⁰⁵ 그런 상황에 대한 목인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내가 “운명”이라 말하는 선택을 평가한 것은 그저, 그렇게 말하는 위안부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뿐이다.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한 이의 목소리를 전한 것도 같은 이유다.⁰⁰⁶ 나는 ‘다른’ 목소리를 절대화하지 않았고, 정영환의 말처럼 그저 “귀 기울였을” 뿐이다. 그런 목소리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억압이 이들에게도 의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영환이 말하는 바 “증언의 찬탈”은 오히려, 정영환과 같

은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지적한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의 “방법”이 “윤리와 대상과의 긴장관계를 놓친 방법”이며 “역사를 쓰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476)는 비판은 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비판일 뿐이다.

3. 『화해를 위해서』 비판에 대해서

정영환은 10년전의 나의 책 『화해를 위해서』도 비판하는데, 『제국의 위안부』가 “당시 거론된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계승”(477)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1) 도덕성 공격의 문제

정영환은 김부자를 인용하면서 내가 기존 연구자들의 글을 두고 “정반대의 인용”(477)을 했다고 말한다. 이는 정영환이 나에게 논지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그런데 정영환이 모르는 것이 있다. 모든 텍스트는 꼭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에 준해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글은 저자의 전체 의도와는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인용될 수 있다. 정영환 자신이 나의 책을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점인데 나는 왜곡하지 않았다.

나는 요시미 요시아키와 같은 학자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양심적인’ 학

자조차 ‘물리적 강제성은 부정하니 그 부분은 신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다. 이후 군인이 끌고 갔다는 식의 강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논의가 ‘인신매매’로 옮겨 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구조적 강제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은데 ‘구조적 강제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내가 『화해를 위해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었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당시의 일본이 군대를 위한 조직을 발상했다는 점에서는 그 구조적인 강제성은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개정판, 69)라고 나는 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책을 결코 인용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식민지시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나의 제기까지 인용 없이 사용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쓸 생각이다.

2015년 5월 미국 역사학자들의 성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군인이 끌고 간 강제연행’은 세계는 물론 지원단체조차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강제연행’으로만 믿었던 시점에서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강제성’ 여부로 부정적인 이들이 이 문제에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을 막고자 10년 전에 ‘구조적 강제성’을 말했다. 또 『제국의 위안부』에서 ‘강제성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썼다.

2) 오독과 왜곡

정영환은 내가 위안부가 “일반여성을 위한 희생양”(『화해를 위해서』, 87)이었다고 쓴 부분을 지목해 마치 내가 “일반여성의 보호를 목적”(김부자)으로 하는 것처럼 비난한다(478). 그러나 ‘일본군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과 ‘위안부가 일반여성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인식은 대치되지 않는다.

역사 연구자인 정영환이 텍스트 분석에 대해 문학 연구자만큼의 긴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비판’의 문맥이라면, 더구나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비판이라면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했다. 심지어 정영환은 일반여성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나의 반박마저 비난하면서 ‘적국의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는(김부자) 오독에 더해 “일본군의 폭력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478)한, “전쟁터의 일반여성이 자기대신 강간당한 위안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라고까지 말한다.

내가 일반여성의 문제를 말한 것은 ‘계급’의 시점에서다. 즉 “주인덕 배운 여자”(『화해를 위해서』, 88) 대신 위안부로 나갔던 위안부의 존재에 주목했던 것이고, 그녀들을 내보내고 후방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한/일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 그리고 그녀들의 후예들에게도 책임의식을 촉구하기 위한 문맥이었다. 물론 그 기반에는 나 자신의 책임의식이 존재한다.

3) 총체적 몰이해

정영환은 서경식의 비판에 의존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과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을 비판하지만, 서경식의 비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구식민지종주국들의 “공동방어선”⁰⁰⁷을 일본 리버럴지식인들의 심성으로 등치시키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했다.

그리고 나는 한일갈등을 정대협이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일본 측도 분명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영환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내가 ‘가해자를 비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규정했고 이후 그 인식은 확산되었다.

정영환은 내가 사용한 “배상”이라는 단어를 문제시하지만 정대협은 “배상”에 국가의 법적책임의 의미를, “보상”에 의무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정영환이 지적하는 “쓰구나이금”이란 책에도 썼

듯이 “속죄금”에 가까운 뉘앙스의 단어다. 물론 일본은 이 단어에 “배상”이라는 의미를 담지 않았고, 나 역시 정대협이 사용하는 의미에 준해 “배상”이라는 의미를 피해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금을 그저 “위로금”으로 간주한 이들에 대한 비판의 문맥에서였다. “쓰구나이금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보상이 아니”⁽⁴⁷⁹⁾라는 데는 나 역시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정영환은 잘못된 전제로 접근하면서 내가 사용한 “보상”이라는 단어가 “쟁점을 해소”⁽⁴⁸⁰⁾한다고 비난한다.

참고로 언급해두자면, 일본 정부는 국고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음엔 간접지원하기로 했던 300만 엔마저 결국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한 60명의 한국인 위안부들은 실상은 ‘일본국가의 국고금’도 받은 것이 된다. 여전히 “배상”은 아니지만 기금이 그저 “민간기금”이라는 이해도 수정되어야 한다.

4. 정영환의 ‘한일협정’ 이해의 오류

1)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임에 대해

정영환은 내가 위안부 문제의 “그 책임을 일본국가에 물을 수 없다”⁽⁴⁸⁰⁾고 한 것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나는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업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일본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정황을 감안해 판단하면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 요구는 무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업자’ 등 중간자들의 존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야말로 가혹한 폭력과 강제노동의 주체이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유

과나 사기 등은 당시에조차 차별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안부의 ‘미움’이 이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공식적인 지휘명령계통을 통해 위안소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요시미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지만, 여성의 ‘징집을 명령한 것이었다’는 규정이 물리적 강제연행을 상상태 하고 업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인 이상 좀 더 섬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병참부속시설”이라는 나가이의 지적 역시 지지하지만, 기존 유곽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을 보는 이유는 일본의 책임을 회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자들이 말하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다.

정영환의 나에 대한 비판이 순수한 의문을 벗어난 곡해임은, 수요를 만든 것 자체, 즉 전쟁을 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나의 글을 인용하면서 “위의 인용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따라갈 정도였다면 군위안소제도엔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481)다고 하는 지적에 나타난다. 심지어 “업자의 일탈만 문제 삼는다면 군위안소라는 제도 자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481)이라고 쓰는 정영환의 “비약”에는 그저 놀랄 뿐이다.

나는 “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와 여성의 징집, 공권력을 통한 연행”(482)을 같이 놓고 “예외적인 일”로 기술하지 않았다. 내가 예외적인 일로 기술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공권력을 통한 연행”뿐이다. 그럼에도 정영환은 이런 식으로 요약해 내가 ‘군의 위안소 설치’마저 예외적인 일로 간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한다.

2) 현재 판결에 관해

현재 판결에 대해서, 나는 분명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회의적

이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형식—재판에 의거한 청구권 요구라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회의였을 뿐 보상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정영환은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정리를 한다.

또 나는 지원단체가 의거해온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해서는 “위안부제도를 위법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아이타니의 지적에 공감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 아니다. 아이타니의 의도가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어도, 그러한 방법의 틀로는 ‘성립되지 않음’을 말한 논문임은 분명하고, 나는 그 부분에 주목했을 뿐이다.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한 연구인 것처럼 인용”했다는 지적 역시 단순한 오독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일 뿐이다. 정영환은 늘 형식부정을 내용부정으로 등치시킨다. 심지어 이제 지원단체 스스로가 “법적 책임” 주장을 변경했다는 것도 정영환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⁰⁰⁸

3) 한일회담에 대해

정영환은 내가 김창록의 논문도 “반대로 인용”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김창록이 인용한 여러 회담문안을 정영환의 지적과는 다른 문맥에서 사용했다. 그러니 이 역시 근거 없는 비난이다.

김창록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논의된 것은 ‘피징용자의 미수금’이었고, 정영환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의 위안부에 관한 논의는 오로지 ‘미수금’만이 문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위안부는 “군속”이었다고 말하는 자료도 나왔으니⁰⁰⁹ 나의 논지에 의거한다면 일본이 위안부를 “군속”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인 일본군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했지만 위안부들에게는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인식은 위안부

에 관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정영환은 내가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지급한 금액을 ‘전후보상’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나는 샌프란시스코회담에 의거한 회담이니 연합국과의 틀 안에서 정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제국후처리’가 아닌 ‘전후처리’에 해당한다고 했을 뿐이다.

정영환은 487쪽에서 488쪽의 부분에서 나의 책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미국이 일본인들의 한반도 재산을 접수해 한국에 불하하고, 그것으로 외지에서 일본인을 귀환시켜준 비용을 상쇄시켰다는 부분을 빼고 인용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야말로 내가 일본에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이해하게 된 부분이다. 국가가 상쇄시켜버린 ‘개인의 청구권’을 다시 허용한다면 일본인들 역시 한반도에 남긴 자산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이때의 보상이 ‘전쟁’후처리일 뿐 ‘식민지배’후처리가 아니라고 말해 65년 보상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 그럼에도 정영환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내가 1965년체제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한일협정금액을 “전쟁에 대한 배상금”이라 하지 않았다. ‘전후처리에 따른 보상’이라 했다. 또한 장박진의 연구를 인용한 것은 냉전체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에서다. “맥락과 전혀 다르게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고, 장박진이 “한국 정부에 추궁할 의사가 없었다고 비판”한 문맥을 무시하지 않았다.

정영환이 아직 모르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때 식민지배에 관한 ‘정치적 청산’마저 해버렸다는 점이다.¹⁰⁰ 아사노 논문은 『제국의 위안부』 출간 이후에 나왔다. 나는 책에서 일본을 향해서 ‘식민지배보상’이 아니었으니 보상이

남아 있다고 썼는데, 아사노 논문을 읽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이제 아사노 논문을 도외시하고는 이야기될 수 없을 것이다.

5. 생산적인 담론을 위해

정영환은 이제 서경식이나 다카하시 데즈야조차 비판한다. 다카하시는 리버럴 지식인 중에도 드러나게 ‘반성적인’ 시각과 태도를 견지해온 인물이고 서경식과 공동작업을 많이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이들과까지 비판하는 정영환에게 첫 답변에서 물었던 말을 다시 묻고 싶다. 정영환의 비판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분명한 건 정영환의 “방법”은 일본사회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들과져 등돌리게 만들어 재일교포사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일본사회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영환의 비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나에 대한 비판방식이 증명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생산적인 담론 생산에 힘을 써주기를 바란다. ㉞

주

- 001 매수가 충분치 않아 이 글에서는 나의 책 인용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 글의 논지를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은 『제국의 위안부』(2015년 6월에 일부삭제판이 간행되었다)와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2005 초판, 2015 개정판)를 참조해주시 바란다. 이에 앞서서 서론격 글을 2015년 8월 말경에 박유하의 페이스북(노트)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www.facebook.com/parkyuha
- 002 이 반론을 집필 중이던 2015년 8월 13일에 『한겨레신문』이 정영환/박노자의 대답을 신고 다시 한 번 나를 비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영환의 나에게 대한 비판의 문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전사(前史)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1의 글을 참조바란다.
- 003 정영환이 블로그에 연재한 나에게 대한 비판의 제목은 “『제국의 위안부』의 방법”이다. “방법”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내게 내용 이전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학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하는 전략이 뚜렷하다.
- 004 朴裕河, 「あいだに立つとはどういうことか—慰安婦問題をめぐる90年代の思想と運動を問い直す」, 『インパクション』 171호, 2009. 11.
- 005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이 20여 년간 여러 번 변했다. 최근 과거 증언집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는 증언의 불일치를 지적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6>
- 006 박유하, 「위안부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자료집, 2014. 4. 29.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에 수록.
- 007 徐京植, 『植民地主義の暴力』, 高文研, 2010, 70쪽.
- 008 『한겨레신문』 2015. 4. 23.
- 009 波止場清, 「慰安婦は軍属—辻政信が明言」, 『허핑턴 포스트』 2015. 8. 3. 일본육군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가 『潛行三千里』라는 책에서 위안부는 “신분도 군속”이라고 쓴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 010 아사노 도요미, 「‘국민감정’과 ‘국민사’의 충돌. 봉인, 해제의 궤적—보편적 정의의 모색과 뒷받침되어야 할 공통의 기억을 둘러싸고」, 근간 수록 예정.